

#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규정

제정 2015. 3. 31.      개정 2016. 6. 23.

개정 2016. 11. 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경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이 학문발전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 및 수요자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학 교육과정운영 및 편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편성”이라 함은 학문발전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교육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수요자 요구사항이 충족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교육과정 편성기준”이라 함은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을 의미한다.

**제4조(책임과 권한)** ① 교육과정운영의 주관부서는 교학처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편성기준 작성 및 심의의뢰
2. 교육과정편성표 검토 및 심의의뢰

② 교육과정운영의 관련 부서는 학부(과)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편성표 작성, 검증 및 타당성 확인
2. 교육과정 변경요청
3. 학부(과)단위 “교육과정개발위원회” 운영

**제5조(교육과정 편성 및 구성)** ① 교육과정은 학문발전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교과간의 연계성을 유지하며 인접 학문과의 중복을 피하여 능률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필요시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학처장은 교육과정의 신설 및 개편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

③ 교육과정은 교양, 직업기초교양, 교직, 전공기초, 전공교과로 나누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교양교과(인성교육교과, 외국어교과, 창업교과)
2. 직업기초교양교과
3. 교직교과(해당학과)
4. 전공교과(전공기초교과, 전공실무교과, 창업실습교과, 현장실습(CO-OP교과 포함)교과)

④ 학점의 구성은 2년제 80학점, 3년제 120학점, 4년제 136학점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2년제 84학점, 3년제 126학점, 4년제 148학점으로 편성할 수 있다.

- ⑤ 교양교과는 직업기초교양교과는 2년제 8학점, 3년제 12학점, 4년제 20학점을 편성하여야 한다.
- ⑥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동안 15시간의 이론 강의 및 실험·실습·실기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임상실습 등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편성하고자 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편성할 수 있다.
- ⑦ 실험·실습 시수의 비율은 인문사회계열 40±5%, 자연과학·예체능계열은 60% 이상으로 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교양교과(직업기초교양 포함), 전공교과목의 편성비율은 교양교과 10%~20%, 전공교과 80~90%로 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사정이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다르게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 ⑧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은 졸업시 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학 및 학적이 변동된 자는 복학 및 신규허가 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때 이수한 교과목을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
- ⑨ 교육과정표는 2년제는 4개학기로, 3년제는 6개학기로, 4년제는 8개학기로 학점·시간(이론/실습)을 구분하여 편성하고 합계를 기록한다.

[전문개정 2016.6.23.]

- 제5조의2(교과목의 구성)** ① 직업기초교양이라 함은 모든 산업 혹은 직업에서 기업체의 특성, 성별, 직급 등에 관계없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수리능력, 자기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직업윤리 등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 ② 전공기초라 함은 전공 이수를 위한 기초 교과목으로서 인력양성유형별 공통으로 요구되는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 ③ 전공교과라 함은 전공을 위한 기초 및 총론 성격의 과목, 해당 학과의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NCS 기반의 교과 및 현장 중심의 전공이론과 실험실습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 ④ 비교과 교과목은 전공교과와 직업기초교양 과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기초능력 및 기초학습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16.6.23.]

- 제5조의3(교육과정의 개발)** ① 학과는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요자 요구사항 반영 및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학과 교육목표의 연계성을 포함하여 NCS에 근거한 교육과정을 개발 또는 도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학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1. 매년 실시되는 학과교육과정개발위원회의 교육과정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교육과정심의회위원회의 교육과정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③ 대학은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을 위하여 학과에 교육과정편성기준 통보 및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과는 교육과정개발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학과교육과정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교육과정개발보고서를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정의 개발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여야 하며, 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NCS 또는 DACUM에 의해 개발한 후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대학평의원회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3.]

**제5조의4(교양교육과정의 개발)** ① 교양교육과정은 학과별 인력양성유형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 대경대학교 인재상 및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과
2. 학과별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직업기초교양 교과
3. 기타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

② 직업기초교양 교과의 개발은 학과별로 교육과정개발보고서 양식에 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③ 교양교육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양교육과정이 개발되었는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 기타 비교과 교과목(특강, 학습역량강화 등)을 실시함으로써 직업기초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3.]

**제6조(교육과정 편성 시 고려사항)** 학부(과)장은 교육과정 편성에 앞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안)을 작성한다.

1. 사회변화 추세
2. 학문의 발전과 변화
3.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4. 기 편성된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및 학생과 수요자 요구사항
5.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6. 산업체 요구사항

**제7조(교육과정개발위원회)** ① 학과는 교육과정의 개발 또는 개편을 위하여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전임교원 전체와 산업체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 중 산업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기능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질 개선을 위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2.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의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와 학과의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심의
4. 교육과정개발(개편)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직무능력인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6.23.]

**제8조(교양교육심의위원회)** ① 대학에 교양교육 및 인성교육 편성과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양교육심의위원회(이하 “교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양위원회는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NCS지원센터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을 포함한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한 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교양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교양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양교육운영 정책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와 개설된 교양교과목과의 연계성에 관한 사항
3. 교양교과목 개발 및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교양위원회는 각 학과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학과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6.6.23.]

**제9조(교육과정 확정)** 학부(과) 단위 교육과정개발위원회에서 심의된 교육과정편성표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제10조(교육과정 개선 및 변경)** ① 학부(과)는 주기적으로 교육과정을 평가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편성 시 교육과정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한다.

② 확정된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운영 전(학기 개시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